

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처리기간		즉시	
신 고 인	성 명					한자 성명 漢子 姓名		
	성 별	[]남 []여	생년 월일			국 적		
	외국인등록번호							
	연락처	주 소:						
		전화번호(휴대전화):						
		전자우편:						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최초 취업인 경우 현 사업장만 내용 기재

신고 내용	신고 사유	[] 최초 취업 [] 사업장 등의 변경					
	종전 사업장	사업자등록번호	사업장명	전화번호	업종	직위 및 담당업무	
	현사업장	사업자등록번호	사업장명	전화번호	업종	직위 및 담당업무	

「출입국관리법」 제3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신고일자: 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외국인등록증 사본,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, 표준근로계약서 사본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 사본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신고인	서명 또는 인

유의사항	
1.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가사서비스업종에 취업한 경우에는 ‘사업자등록번호’를 「888-88-88888」로 적기 바랍니다. 2. 신고내용에 따라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에서 출석 또는 신청서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. 3.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개시 신고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기간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향후 체류기간 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4. 팩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에서 수신확인 팩스가 발신 팩스번호로 자동 송부되니,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.	